

지 방 교 부 세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기 관 명 (부 서 명)	행정안전부 (교 부 세 과)
연 월 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재난안전 투자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수요를 신설·강화하고,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뉴딜사업 지원을 위한 수요를 보강하는 한편, 환경 보호 및 환경재난에 대한 수요를 신설·보강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지난해 개편시 자치단체의 이월·불용 감축 및 수입 자체노력 관련 항목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지방교부세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지방교부세 업무 전반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수립·확정한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에 대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교부세 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명시(시행규칙 제16조의2)

나. 재난안전 투자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수요 신설·강화,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 보강, 환경보호 및 환경재난에 대한 수요 신설·보강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항목 정비(시행규칙 별표4, 별표6)

- 1) 별표4, 지역균형수요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수요 신설(자체노력 반영항목에서 변경), 재난안전투자 수요 신설, 취약계층 보호구역 수요 신설, 환경보호비 관련 7개 항목 일몰기한 연장, 미세먼지 관련 수요 강화, 축산·가금류 수요 강화, 고용감소지역 수요 강화, 일자리 수요 신설(자체노력 반영항목에서 변경),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수요 신설(자체노력 반영항목에서 변경) 등
- 2) 별표4, 사회복지균형수요 중 합계출산율의 유형 항목 정비 등
- 3) 별표6, 세출 효율화 항목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항목 삭제(지역균형수요로 변경), 일자리 창출 항목 삭제(지역균형수요로 변경), 예산집행 노력 항목 중 불용률·이월률 적용 기준 변경 및 이월액 제외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항목 삭제(지역균형수요로 변경) 등
- 3) 별표6, 세입 확충 항목 중 지방세 징수율·지방세 체납징수율·경상세외수입 징수율·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적용 기준 변경, 감면액 적용 범위 확대, 탄력세율 적용·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 항목 통합 등

다. 기타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 및 자체노력 분야 일부 개선 등(시행규칙 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6 등)

- 1) 별표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변경

- 2) 별표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정식 변경
- 3) 별표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정식 변경
- 4) 별표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일부 변경

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기준 정비 등(시행규칙 별표8)

- 1)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중 항구복구비 지원 대상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확정한 복구소요액을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1. 00. ~ 12. 00.) 예정

부령 제 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교부세 업무의 정보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등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6, 별표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6조의2(교부세 업무의 정보화)</u>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u> <u>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u> <u>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u> <u>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에</u> <u>필요한 자료의 등록 및 관리 등의</u> <u>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u>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별표 1]

현행					개정안	
측정항목 · 측정단위별 단위비용(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표시단위	지방자치단체	단위비용(단위 : 원)	지방자치단체	단위비용(단위 : 원)
1. 일반 행정 비	가. 인건비	공무원 수	명	특별시	특별시	63,323,090
				광역시	광역시	63,323,090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63,323,090
				도	도	55,754,720
				시	시	64,111,350
				군	군	64,162,330
	나. 일반관리비	공무원 수	명	특별시	특별시	19,287,370
				광역시	광역시	19,287,370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19,287,370
				도	도	16,302,150
				시	시	28,154,560
				군	군	25,781,520
	다. 안전관리비	인구 수	명	특별시	특별시	21,430
				광역시	광역시	21,430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21,430
				도	도	19,100
				시	시	31,240
				군	군	144,350

현행						개정안	
2. 문 화 환 경 비	가. 문화관광비	인구 수	명	특별시	<u>80,650</u>	특별시	<u>85,060</u>
				광역시	<u>80,650</u>	광역시	<u>85,060</u>
				특별자치시	<u>80,650</u>	특별자치시	<u>85,060</u>
				도	<u>28,760</u>	도	<u>29,080</u>
				시	<u>90,060</u>	시	<u>96,920</u>
				군	<u>252,960</u>	군	<u>268,630</u>
	나. 환경보호비	인구 수	명	특별시	<u>83,150</u>	특별시	<u>91,810</u>
				광역시	<u>83,150</u>	광역시	<u>91,810</u>
				특별자치시	<u>83,150</u>	특별자치시	<u>91,810</u>
				도	<u>8,880</u>	도	<u>12,700</u>
				시	<u>114,000</u>	시	<u>127,480</u>
				군	<u>304,650</u>	군	<u>328,690</u>
3. 사 회 복 지 비	가.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명	특별시	<u>646,420</u>	특별시	<u>595,310</u>
				광역시	<u>646,420</u>	광역시	<u>595,310</u>
				특별자치시	<u>646,420</u>	특별자치시	<u>595,310</u>
				도	<u>292,720</u>	도	<u>272,190</u>
				시	<u>312,750</u>	시	<u>298,050</u>
				군	<u>423,800</u>	군	<u>421,500</u>
	나. 노인복지비	노령인구 수	명	특별시	<u>1,019,460</u>	특별시	<u>1,059,480</u>
				광역시	<u>1,019,460</u>	광역시	<u>1,059,480</u>
				특별자치시	<u>1,019,460</u>	특별자치시	<u>1,059,480</u>
				도	<u>152,590</u>	도	<u>153,680</u>
				시	<u>800,250</u>	시	<u>846,340</u>
				군	<u>893,070</u>	군	<u>943,570</u>

현행						개정안	
	다. 아동복지비	아동 수	명	특별시	<u>1,261,140</u>	특별시	<u>1,331,140</u>
				광역시	<u>1,261,140</u>	광역시	<u>1,331,140</u>
				특별자치시	<u>1,261,140</u>	특별자치시	<u>1,331,140</u>
				도	<u>262,770</u>	도	<u>275,200</u>
				시	<u>1,000,340</u>	시	<u>1,040,190</u>
				군	<u>1,526,420</u>	군	<u>1,639,870</u>
	라.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 수	명	특별시	<u>1,355,110</u>	특별시	<u>1,484,160</u>
				광역시	<u>1,355,110</u>	광역시	<u>1,484,160</u>
				특별자치시	<u>1,355,110</u>	특별자치시	<u>1,484,160</u>
				도	<u>172,180</u>	도	<u>197,220</u>
				시	<u>846,080</u>	시	<u>968,220</u>
				군	<u>833,720</u>	군	<u>969,450</u>
	마. 보건사회복지비	인구 수	명	특별시	<u>98,510</u>	특별시	<u>100,180</u>
				광역시	<u>98,510</u>	광역시	<u>100,180</u>
				특별자치시	<u>98,510</u>	특별자치시	<u>100,180</u>
				도	<u>33,580</u>	도	<u>33,860</u>
				시	<u>83,860</u>	시	<u>92,170</u>
				군	<u>219,440</u>	군	<u>224,990</u>
	가. 농업비	경지 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u>332,020</u>	특별시	<u>257,670</u>
				광역시	<u>332,020</u>	광역시	<u>257,670</u>
				특별자치시	<u>332,020</u>	특별자치시	<u>257,670</u>
				도	<u>57,900</u>	도	<u>62,450</u>
				시	<u>261,270</u>	시	<u>283,770</u>
				군	<u>261,490</u>	군	<u>280,560</u>

현행						개정안	
4. 지 역 경 제 비	나. 임수산비	산림·어장·갯벌 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u>55,850</u>	특별시	<u>56,600</u>
				광역시	<u>55,850</u>	광역시	<u>56,600</u>
				특별자치시	<u>55,850</u>	특별자치시	<u>56,600</u>
				도	<u>65,170</u>	도	<u>70,750</u>
				시	<u>31,330</u>	시	<u>35,080</u>
				군	<u>28,790</u>	군	<u>31,760</u>
	다. 산업경제비	사업체 종사자 수	명	특별시	<u>151,500</u>	특별시	<u>158,400</u>
				광역시	<u>151,500</u>	광역시	<u>158,400</u>
				특별자치시	<u>151,500</u>	특별자치시	<u>158,400</u>
				도	<u>76,910</u>	도	<u>81,970</u>
				시	<u>111,230</u>	시	<u>128,660</u>
				군	<u>265,990</u>	군	<u>286,800</u>
	라. 도로관리비	도로 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u>5,700,910</u>	특별시	<u>5,238,950</u>
				광역시	<u>5,700,910</u>	광역시	<u>5,238,950</u>
				특별자치시	<u>5,700,910</u>	특별자치시	<u>5,238,950</u>
				도	<u>8,466,070</u>	도	<u>6,451,690</u>
				시	<u>8,190,960</u>	시	<u>7,497,050</u>
				군	<u>11,047,290</u>	군	<u>9,425,800</u>
	마. 교통관리비	자동차 대수	대	특별시	<u>127,580</u>	특별시	<u>123,810</u>
				광역시	<u>127,580</u>	광역시	<u>123,810</u>
				특별자치시	<u>127,580</u>	특별자치시	<u>123,810</u>
				도	<u>22,470</u>	도	<u>26,310</u>
				시	<u>112,380</u>	시	<u>162,740</u>
				군	<u>164,110</u>	군	<u>206,590</u>

현행						개정안	
				특별시	<u>201,820</u>	특별시	<u>258,390</u>
				광역시	<u>201,820</u>	광역시	<u>258,390</u>
				특별자치시	<u>201,820</u>	특별자치시	<u>258,390</u>
				도	<u>5,650</u>	도	<u>6,000</u>
				시	<u>75,960</u>	시	<u>78,680</u>
				군	<u>33,550</u>	군	<u>32,810</u>
	바. 지역관리비	행정구역 면적	천제곱미터				
※ 단위비용 산정방식 : $\frac{\text{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합}}{\text{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수치의 합}}$						(현행과 같음)	

[별표 2]

현행				개정안					
측정 항목별 표준 행정수요액 산정 방식(제4조 제2항 관련)									
경비의 종류		산정 방식		비고(ω)		산정 방식		비고(ω)	
1. 인건비		시·도 시·군 · 구	$Y_i = \text{기준인건비} \times$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일반회계 인건비 일반재원}}{\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인건비(일반회계 + 특별회계)}} \times \omega$ ※ 특별회계에 있는 소방인건비는 일반회계로 간주하되,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되는 소방인건비는 제외한다.	특별시(0.7489) 광역시(0.7405) 특별자치시(0.7455) 도(0.7402) 시(0.7405) 군(0.7285) 구(0.7678)		시·도 시·군 · 구	$Y_i = \text{기준인건비} \times$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일반회계 인건비 일반재원}}{\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인건비(일반회계 + 특별회계)}} \times \omega$ ※ 특별회계에 있는 소방인건비는 일반회계로 간주하되,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되는 소방인건비는 제외한다.	<u>특별시(0.7666)</u> <u>광역시(0.7577)</u> <u>특별자치시(0.7614)</u> <u>도(0.7557)</u> <u>시(0.7558)</u> <u>군(0.7447)</u> <u>구(0.7806)</u>	
2. 일반관리비		시·도	$Y_i = [3616.17581 + 27.92067 (Ge + La)] \times \omega$	특별시(0.5853) 광역시(0.4311) 특별자치시(0.7843) 도(0.4826) 시(0.8747) 군(0.7630) 구(0.7687)		시·도	$Y_i = [-7985.01165 + 38.90157(Ge + La)] \times \omega$	<u>특별시(0.5901)</u> <u>광역시(0.4245)</u>	
		시·군 · 구	$Y_i = [3616.17581 + 27.92067 (Ge + La)] \times \omega$			시·군 · 구	$Y_i = [-7985.01165 + 38.90157(Ge + La)] \times \omega$	<u>특별자치시(0.5815)</u> <u>도(0.4275)</u> <u>시(0.8277)</u> <u>군(0.9218)</u>	
		※ Ge : 기준인건비 공무원 수, La : 지방의원 수				※ Ge : 기준인건비 공무원 수, La : 지방의원 수		<u>구(0.7268)</u>	

현행				개정안			
3. 안전관리비	시·도	$\frac{\ln Y_i = [0.95477 + 0.49419 \ln P + 0.44582 \ln(Df + F_s)] \times \omega}{}$	특별시(0.5481) 광역시(0.5440) 특별자치시(1.1045) 도(0.7167) 시(0.8506) 군(0.7626) 구(0.5134)	시·도	$\frac{\ln Y_i = [-2.12668 + 0.64427 \ln P + 0.60301 \ln(Df + F_s)] \times \omega}{}$	특별시(0.4421) 광역시(0.5356) 특별자치시(1.2630) 도(0.7184) 시(0.8338) 군(0.7520) 구(0.4881)	
	특별자치시	$\frac{\ln Y_i = [0.95477 + 0.49419 \ln P + 0.44582 \ln(Df + F_s)] \times \omega + 0.02979 S_r}{}$		특별자치시	$\frac{\ln Y_i = [-2.12668 + 0.64427 \ln P + 0.60301 \ln(Df + F_s)] \times \omega + 0.02656 S_r}{}$		
	시·군·구	$\frac{Y_i = [(364.85984 + 0.01476 P + 0.00558 A + 0.01477 S_r)] \times \omega}{}$		시·군·구	$\frac{Y_i = [(1104.34644 + 0.01474 P + 0.00806 A + 0.01142 S_r)] \times \omega}{}$		
	※ P : 인구 수, A : 행정구역 면적, Df : 재난관리대상 시설 수, F _s : 소방관서 수, S _r : 소하천 길이			※ P : 인구 수, A : 행정구역 면적, Df : 재난관리대상 시설 수, F _s : 소방관서 수, S _r : 소하천 길이			
4. 문화관광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frac{Y_i = (21149 + 0.03709 P + 0.00191 A) \times \omega}{}$	특별시(0.7220) 광역시(0.8888) 특별자치시(1.0529) 도(0.6725) 시(0.8049) 군(0.6227) 구(0.723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frac{Y_i = (24471 + 0.03793 P + 0.00178 A) \times \omega}{}$	특별시(0.6610) 광역시(0.9261) 특별자치시(0.7528) 도(0.6695) 시(0.7962) 군(0.5963) 구(0.6601)	
	도	$\frac{Y_i = (10046 + 0.01420 P + 0.00774 A) \times \omega}{}$		도	$\frac{Y_i = (27657 + 0.01491 P + 0.00623 A) \times \omega}{}$		
	시·군·구	$\frac{\ln Y_i = (0.18171 + 0.39735 \ln P + 0.41317 \ln A) \times \omega}{}$		시·군·구	$\frac{\ln Y_i = (0.41812 + 0.39026 \ln P + 0.40863 \ln A) \times \omega}{}$		
	※ P : 인구 수, A : 행정구역 면적			※ P : 인구 수, A : 행정구역 면적			

현행				개정안			
5. 환경보호비	시·도	$\frac{\ln Y_i = (4.13840 + 0.33973 \ln P + 0.15605 \ln A)}{\times \omega}$	특별시(1.9650) 광역시(0.6334) 특별자치시(1.3206) 도(0.2536) 시(0.9067) 군(0.8212) 구(0.7771)	시·도	$\frac{\ln Y_i = (3.67417 + 0.36997 \ln P + 0.17624 \ln A) \times \omega}{\omega}$	특별시(1.5791) 광역시(0.6539) 특별자치시(1.0301) 도(0.2655) 시(0.8880) 군(0.7717) 구(0.6935)	
	시·군·구	$\frac{\ln Y_i = (0.99632 + 0.48911 \ln P + 0.27108 \ln A)}{\times \omega}$		시·군·구	$\frac{\ln Y_i = (1.13046 + 0.48966 \ln P + 0.27066 \ln A) \times \omega}{\omega}$		
	※ P : 인구 수, A : 행정구역 면적			※ P : 인구 수, A : 행정구역 면적			
6. 기초생활보장비	시·도	$\frac{\ln Y_i = (-0.53979 + 0.98503 \ln Bl) \times \omega}{\times \omega}$	특별시(1.1374) 광역시(0.6876) 특별자치시(1.0953) 도(0.6075) 시(0.8132) 군(0.7590) 구(0.8791)	시·도	$\frac{\ln Y_i = (-0.84844 + 1.01173 \ln Bl) \times \omega}{\times \omega}$	특별시(1.1151) 광역시(0.6182) 특별자치시(1.0339) 도(0.5473) 시(0.7644) 군(0.7212) 구(0.7994)	
	시·군·구	$\frac{Y_i = (1400.22409 + 0.32756 Bl) \times \omega}{\times \omega}$		시·군·구	$\frac{Y_i = (1577.58542 + 0.32958 Bl) \times \omega}{\times \omega}$		
	※ Bl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생계+의료+주거+교육)			※ Bl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생계+의료+주거+교육)			
7. 노인복지비	시·도	$\frac{Y_i = (36245 + 0.32207 Sc) \times \omega}{\times \omega}$	특별시(0.7139) 광역시(1.0740) 특별자치시(0.4799) 도(0.3926) 시(0.9761) 군(0.8237) 구(0.7723)	시·도	$\frac{Y_i = (51227 + 0.34118 Sc) \times \omega}{\times \omega}$	특별시(0.6625) 광역시(1.0361) 특별자치시(0.4065) 도(0.3572) 시(0.9314) 군(0.7834) 구(0.6873)	
	특별자치시	$\frac{Y_i = (36245 + 0.32207 Sc) \times \omega + 4.63138 Sh}{\times \omega}$		특별자치시	$\frac{Y_i = (51227 + 0.34118 Sc) \times \omega + 5.55196 Sh}{\times \omega}$		
	시·군·구	$\frac{\ln Y_i = (1.74371 + 0.74150 \ln Sc + 0.14296 \ln Sh) \times \omega}{\times \omega}$		시·군·구	$\frac{\ln Y_i = (1.85322 + 0.74676 \ln Sc + 0.13486 \ln Sh) \times \omega}{\times \omega}$		
	※ Sc : 노령인구 수, Sh : 경로당 수(신고)			※ Sc : 노령인구 수, Sh : 경로당 수(신고)			

현행				개정안			
8. 아동복지비	시·도	$\ln Y_i = (0.76718 + 0.89355 \ln Ch) \times \omega$	특별시(1.1244) 광역시(0.8014) 특별자치시(1.3324) 도(0.5202) 시(0.9823) 군(0.9213) 구(0.7844)	시·도	$\ln Y_i = (1.26722 + 0.86648 \ln Ch) \times \omega$	특별시(1.1012) 광역시(0.7389)	
	시·군·구	$\ln Y_i = (2.62452 + 0.76701 \ln Ch) \times \omega$		시·군·구	$\ln Y_i = (2.79009 + 0.76313 \ln Ch) \times \omega$	특별자치시(1.1573) 도(0.4758) 시(0.8997)	
	※ Ch : 아동 수			※ Ch : 아동 수		군(0.8629) 구(0.7168)	
9. 장애인 복지비	시·도	$\ln Y_i = (3.59687 + 0.63694 \ln Dp) \times \omega$	특별시(1.9360) 광역시(1.1987) 특별자치시(0.6840) 도(0.4061) 시(0.8584) 군(0.8948) 구(0.7719)	시·도	$\ln Y_i = (3.8891 + 0.63154 \ln Dp) \times \omega$	특별시(1.7579) 광역시(1.0909)	
	시·군·구	$Y_i = (-331.31374 + 1.00655 Dp) \times \omega$		시·군·구	$Y_i = (-98.15667 + 1.17347 Dp) \times \omega$	특별자치시(0.6702) 도(0.3733) 시(0.8294)	
	※ Dp : 등록 장애인 수			※ Dp : 등록 장애인 수		군(0.8419) 구(0.6863)	
10. 보건사회 복지비	시·도	$\ln Y_i = (-1.17072 + 0.89159 \ln P) \times \omega$	특별시(1.2804) 광역시(0.7310) 특별자치시(1.3851) 도(0.5743) 시(0.8625) 군(0.8879) 구(0.7459)	시·도	$\ln Y_i = (-1.39934 + 0.91524 \ln P) \times \omega$	특별시(1.1973) 광역시(0.6687)	
	특별자치시	$\ln Y_i = (-1.17072 + 0.89159 \ln P) \times \omega + 0.06309 Hf$		특별자치시	$\ln Y_i = (-1.39934 + 0.91524 \ln P) \times \omega + 0.47138 Hf$	특별자치시(1.0595)	
	시·군·구	$Y_i = (-1644.71727 + 0.06044 P + 1.32294 Hf) \times \omega$		시·군·구	$Y_i = (-1014.52736 + 0.06881 P + 1.29898 Hf) \times \omega$	도(0.5066) 시(0.8489)	
	※ P : 인구 수, Hf : 보건시설 면적			※ P : 인구 수, Hf : 보건시설 면적		군(0.8227) 구(0.6514)	

현행				개정안			
11. 농업비	시·도	$\ln Y_i = (4.32971 + 0.51673 \ln Ac) \times \omega$	특별시(0.9606) 광역시(0.9800) 특별자치시(0.7538) 도(0.9052) 시(0.9539) 군(0.9590) 구(0.3612)	시·도	$\ln Y_i = (3.77241 + 0.56273 \ln Ac) \times \omega$	특별시(1.1066) 광역시(0.6558) 특별자치시(0.8946) 도(0.8681) 시(0.9064) 군(0.8998) 구(0.3772)	
	시·군·구	$Y_i = (2078.43555 + 0.25552 Ac) \times \omega$		시·군·구	$Y_i = (1965.55434 + 0.29558 Ac) \times \omega$		
	※ Ac : 경지(전+답+과) 면적			※ Ac : 경지(전+답+과) 면적			
12. 임수산비	시·도	$Y_i = [17740 + 0.16002 Fo + 0.01182 (Fg+Mf)] \times \omega$	특별시(0.0000) 광역시(0.6215) 특별자치시(0.0800) 도(0.9179) 시(1.0425) 군(0.9867) 구(0.3436)	시·도	$Y_i = [18805 + 0.18934 Fo + 0.01845 (Fg+Mf)] \times \omega$	특별시(0.0000) 광역시(0.5402) 특별자치시(0.0742) 도(0.8420) 시(0.9881) 군(0.9209) 구(0.3414)	
	시·군·구	$Y_i = [2342.50797 + 0.02030 Fo + 0.03844 (Fg+Mf)] \times \omega$		시·군·구	$Y_i = [2504.29707 + 0.02516 Fo + 0.04323 (Fg+Mf)] \times \omega$		
	※ Fo : 산림 면적, Fg : 어장 면적, Mf : 갯벌 면적			※ Fo : 산림 면적, Fg : 어장 면적, Mf : 갯벌 면적			
13. 산업경제비	시·도	$\ln Y_i = (4.61048 + 0.51886 \ln Ce) \times \omega$	특별시(0.5003) 광역시(0.9990) 특별자치시(0.4720) 도(0.7444) 시(1.5709) 군(1.0626) 구(0.1838)	시·도	$\ln Y_i = (4.29432 + 0.40263 \ln Ce) \times \omega$	특별시(5.8769) 광역시(6.9205) 특별자치시(3.4872) 도(5.7204) 시(1.5587) 군(0.8528) 구(0.2025)	
	시·군·구	$Y_i = (4475.71610 + 0.03583 Ce) \times \omega$		시·군·구	$Y_i = (6526.7037 + 0.03324 Ce) \times \omega$		
	※ Ce : 사업체 종사자 수			※ Ce : 사업체 종사자 수			

현행				개정안			
14. 도로관리비	시·도	$\ln Yi = (5.68564 + 0.63295 \ln Ro) \times \omega$	특별시(0.6235) 광역시(0.6858) 특별자치시(0.9502) 도(0.9748) 시(1.1814) 군(0.9075) 구(0.4663)	시·도	$\ln Yi = (7.06463 + 0.47181 \ln Ro) \times \omega$	특별시(0.3993) 광역시(0.6790) 특별자치시(0.9299) 도(0.9089) 시(1.1296) 군(0.7806) 구(0.5260)	
	시·군·구	$Yi = (8160.30022 + 4.87126 Ro) \times \omega$		시·군·구	$Yi = (8853.9675 + 4.43651 Ro) \times \omega$		
	※ Ro : 도로(포장+비포장+미개통) 면적			※ Ro : 도로(포장+비포장+미개통) 면적			
15. 교통관리비	시·도	$\ln Yi = (3.45570 + 0.54605 \ln Ca) \times \omega$	특별시(0.9776) 광역시(1.8903) 특별자치시(0.4090) 도(0.5069) 시(1.4615) 군(0.9140) 구(0.9987)	시·도	$\ln Yi = (3.37757 + 0.55741 \ln Ca) \times \omega$	특별시(0.7951) 광역시(1.6991) 특별자치시(0.3794) 도(0.5510) 시(1.5786) 군(0.8931) 구(0.6947)	
	특별자치시	$\ln Yi = (3.45570 + 0.54605 \ln Ca) \times \omega + \frac{0.00577 A}{\omega}$		특별자치시	$\ln Yi = (3.37757 + 0.55741 \ln Ca) \times \omega + \frac{0.01668 A}{\omega}$		
	시·군·구	$\ln Yi = (-8.27017 + 0.62859 \ln Ca + 0.77875 \ln A) \times \omega$		시·군·구	$\ln Yi = (-7.516 + 0.64021 \ln Ca + 0.73406 \ln A) \times \omega$		
	※ Ca : 자동차 대수, A : 행정구역 면적			※ Ca : 자동차 대수, A : 행정구역 면적			
16. 지역관리비	특별시·광역시	$\ln Yi = (1.83501 + 0.35681 \ln A + 0.31206 \ln P) \times \omega$	특별시(7.5815) 광역시(1.0652) 특별자치시(1.7090) 도(0.8402) 시(1.1378) 군(0.8938) 구(0.6816)	특별시·광역시	$\ln Yi = (2.04965 + 0.33555 \ln A + 0.32544 \ln P) \times \omega$	특별시(6.6231) 광역시(1.4464) 특별자치시(0.9693) 도(0.7607) 시(1.1761) 군(0.8781) 구(0.7179)	
		특별자치시			$\ln Yi = (1.83501 + 0.35681 \ln A + 0.31206 \ln P) \times \omega + 0.01513 Ri$		특별자치시
	도			$Yi = (17843 + 0.00157 A + 0.01201 P) \times \omega$	도		
	시·군·구	$Yi = (-1381.38760 + 0.02469 A + 0.05763 P + 0.03738 Ri) \times \omega$		시·군·구	$Yi = (-1381.3876 + 0.02469 A + 0.05763 P + 0.03738 Ri) \times \omega$		
		※ A : 행정구역 면적, P : 인구 수, Ri : 하천 길이			※ A : 행정구역 면적, P : 인구 수, Ri : 하천 길이		
	비고 (생략)				비고 (현행과 같음)		

[별표 4]

현행			개정안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1.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			
측정항목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
1. 일반 행정비	가. 인건비	(신설)	<u>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수요</u> <u>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환인원 x 전전년도 1인당</u> <u>정규직 전환비용(전국공통비용)</u>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나. 일반 관리비	(생략)	(현행과 같음)
	다. 안전 관리비	<u>안전관리 수요(시·군·구)</u> 보정인구2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1인당 안전 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 구의 기준재정 수요액에 반영한다. (신설)	<u>① 안전관리 수요(시·군·구)</u> 보정인구2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1인당 안전관 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 의 기준재정 수요액에 반영한다. <u>② 재난안전투자 수요</u> <u>총예산 대비 안전·보건예산* x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안전</u> <u>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x 10%</u>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제1항별표9의 세출 예산 기능별 분류 중 공공질서 및 안전과 보건 분야로 한다.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③ 취약계층 보호구역 수요(시·군·구) <u>취약계층 보호구역 x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취약계층보호구역 1구역당 안전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x 5%</u> ※ 취약계층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 12조의2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말한다. ※ 수요산정액의 20%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 반영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2. 문화 환경비	가. 문화 관광비	(생략)	(현행과 같음)
	나. 환경 보호비	① 해안지역 수요(시·군·구) <u>$Y_i = 74.59196 + 0.00224 Co$</u> Co : 해안선 길이 ※ 2020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댐지역 수요(시·군·구) <u>$Y_i = 73.49770 + 0.04631 Da + 0.00029878 Dc$</u> Da : 댐 면적, Dc : 댐 연접지역(읍·면·동) 인구 수 ※ 2020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③ 마을상수도지역 수요(시·군·구) 마을상수도지역 급수 인원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다만, 광역시에 속한 군의 수요는 광역시에 반영한다. ※ 2020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④ (생략)	① 해안지역 수요(시·군·구) <u>$Y_i = 63.39346 + 0.00267Co$</u> Co : 해안선 길이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댐지역 수요(시·군·구) <u>$Y_i = 85.56459 + 0.04986Da + -0.00115Dc$</u> Da : 댐 면적, Dc : 댐 연접지역(읍·면·동) 인구 수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③ 마을상수도지역 수요(시·군·구) 마을상수도지역 급수 인원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다만, 광역시에 속한 군의 수요는 광역시에 반영한다.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⑤ 환경보호 관련 규제지역 수요(시·군·구) 환경보호 관련 규제지역 면적 × 1천㎡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 규제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수변구 역,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한다. ※ 2020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⑥ (생략) ⑦ 산업단지 수요(시·군·구) 산업단지·기업도시(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동종 지 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1천㎡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 요액 × 50% ※ 2020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⑧ 자연공원 수요(시·군·구) 자연공원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1천㎡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 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0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⑨ 폐기물 관련 수요(시·군·구) [폐기물 처리량(매립 + 소각 + 재활용) × 동종 지방자치단체 별 처리량 1톤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 (수 질 정화량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처리량 1㎡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5%)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 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0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⑤ 환경보호 관련 규제지역 수요(시·군·구) 환경보호 관련 규제지역 면적 × 1천㎡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 규제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수변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한다.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산업단지 수요(시·군·구) 산업단지·기업도시(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동종 지방 자치단체별 행정구역 1천㎡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50%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⑧ 자연공원 수요(시·군·구) 자연공원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1천㎡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 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⑨ 폐기물 관련 수요(시·군·구) [폐기물 처리량(매립 + 소각 + 재활용) × 동종 지방자치단체 별 처리량 1톤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 (수질 정화량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처리량 1㎡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5%)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 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현행			개정안		
		⑩ 미세먼지 관련 수요(시·군·구) [(해당 지방자치단체 A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A)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2%] + [(해당 지방자치단체 B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B)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2%] + [(해당 지방자치단체 C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C)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2%] ※ A = 해당 지방자치단체 신재생에너지 생산총량 ※ B =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기」 및 「환경보호 일반」 부문 일반재원 총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결산총액 ※ C =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기오염 일수* * 대기오염 일수는 PM2.5가 $36\mu\text{g}/\text{m}^3$ 이상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 3년 평균값을 반영한다.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⑩ 미세먼지 관련 수요(시·군·구) [(해당 지방자치단체 A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A)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2%] + [(해당 지방자치단체 B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B)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2%] + [(해당 지방자치단체 C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C)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1%] + [(해당 지방자치단체 D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D)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1%] ※ A = 해당 지방자치단체 신재생에너지 생산총량 ※ B =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기」 및 「환경보호 일반」 부문 일반재원 총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결산총액 ※ C =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기오염 일수* * 대기오염 일수는 PM2.5가 $36\mu\text{g}/\text{m}^3$ 이상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 3년 평균값을 반영한다. ※ D = TMS 등으로 측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3. 지역 경제비	가. 농업비	① 방조제, 배수갑문 수요(시·군·구) $Y_i = 2.28314 + 0.01190 S_w + 2.45329 S_d$ S_w : 방조제 길이, S_d : 배수갑문 수			① 방조제, 배수갑문 수요(시·군·구) $Y_i = 7.91629 + 0.00554 S_w + 5.10827 S_d$ S_w : 방조제 길이, S_d : 배수갑문 수

현행			개정안		
		※ 2021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생략) ③ 축산·가금류 관련 수요(시·군·구) $[\text{축산 마릿수}(\text{소}+\text{돼지} \times \frac{1}{3}) + \text{가금류 마릿수}(\text{닭} \cdot \text{오리} \times \frac{1}{80})] \times \text{동종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소) 마릿수 1마리당 축산부문 일반재원} \times 50\%$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1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1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축산·가금류 관련 수요(시·군·구) $[\text{축산 마릿수}(\text{소}+\text{돼지} \times \frac{1}{3}) + \text{가금류 마릿수}(\text{닭} \cdot \text{오리} \times \frac{1}{80})] \times \text{동종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소) 마릿수 1마리당 축산부문 일반재원} \times 50\% + [\text{도축 축산 마릿수}(\text{소}+\text{돼지} \times \text{A}) + \text{도축 가금류 마릿수}(\text{닭} \times \text{B} + \text{오리} \times \text{C})] \times \text{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도축 축산 마릿수 1마리당 축산부문 일반재원} \times 15\%$ ※ A, B, C =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종별 소 대비 중량비중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1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나. 임수산비	① 방파제, 물양장(物揚場) 길이 수요(시·군·구) $Y_i = 61.17648 + 0.20145 B_w + 0.15283 L_w$ Bw : 방파제 길이, Lw : 물양장 길이 ※ 2021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생략)			① 방파제, 물양장(物揚場) 길이 수요(시·군·구) $Y_i = 39.48092 + 0.25127 B_w + 0.07693 L_w$ Bw : 방파제 길이, Lw : 물양장 길이 ※ 2021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현행과 같음)
	다. 산업경제비	고용감소지역 수요(시·군·구)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수(아동 및 노령인구 제외)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아동 및 노령인구 제외) 1인당 일반재원 * *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 부문 일반재원을 적용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중소기업」 분야 일반재원을 적용하며,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과 산			① 고용감소지역 수요(시·군·구)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수(아동 및 노령인구 제외)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아동 및 노령인구 제외) 1인당 일반재원 * x 120%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제1항 별표9의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노동」 부문, 「산업·중소기업」 분야, 「산업단지」, 「평생·직업교육」 부문 일반재원을

현행			개정안
		<u>업위기대응특별지역 둘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 부문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일반재원을 둘 다 적용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2년 이상 지정될 경우에는 각각에 「산업단지」 및 「평생·직업교육」 부문 일반재원을 추가로 적용한다.</u> ※ 자치구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신설)	<u>적용한다.</u> ※ 자치구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일자리 수요(시·군·구) <u>해당지방자치단체 실업률 x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산업경제비 표준 행정수요액 x 5%</u> ※ 실업률 =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수(취업자+실업자) ※ 수요산정액의 50%는 시·도, 5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 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라. 도로 관리비	① (생략) ② 자전거도로 수요(시·군·구) <u>$Y_i = 87.56194 + 0.01397 Br$</u> Br : 자전거전용도로 연장 ※ 2021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③, ④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전거도로 수요(시·군·구) <u>$Y_i = 36.13877 + 0.02411Br$</u> Br : 자전거전용도로 연장 ※ 2021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③, ④ (현행과 같음)
	마. 교통 관리비	①, ② (생략)	①,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바. 지역 관리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생략) (신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생략) ⑪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수요 기관·시설 등의 공동 건립 및 운영과 관련된 전전년도 지방 자치단체별 자체재원 결산액 총액 x 30%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2.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측 정 항 목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사회 복지비	가. 기초 생활 보장비	(생략)	(현행과 같음)
	나. 노인 복지비	① (생략) ② 노인요양시설 운영 수요(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Y_i = 4900.76746 + 1.673Ra$ 도 : $Y_i = 7457.13841 + 3.6862Ra$ Ra : 노인요양급여지급 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노인요양시설 운영 수요(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Y_i = 4016.10843 + 1.27519Ra$ 도 : $Y_i = 7579.87884 + 2.62483Ra$ Ra : 노인요양급여지급 대상자
	다. 아동 복지비	(생략)	(현행과 같음)
	라. 장애인 복지비	(생략)	(현행과 같음)
	마. 보건 사회 복지비	(생략)	(현행과 같음)
		비고 1~2. (생략) 3. 합계출산율의 유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비고 1~2. (생략) 3. 합계출산율의 유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가. 합계출산율이 <u>1.58명</u> 이상인 경우 : 합계출산율 4 유형 나. 합계출산율이 <u>1.38명</u> 이상 <u>1.58명</u> 미만인 경우 : 합계출산율 3 유형 다. 합계출산율이 <u>1.18명</u> 이상 <u>1.38명</u> 미만인 경우 : 합계출산율 2 유형 라. 합계출산율이 <u>0.98명</u> 이상 <u>1.18명</u> 미만인 경우 : 합계출산율 1 유형	가. 합계출산율이 <u>1.52명</u> 이상인 경우 : 합계출산율 4 유형 나. 합계출산율이 <u>1.32명</u> 이상 <u>1.52명</u> 미만인 경우 : 합계출산율 3 유형 다. 합계출산율이 <u>1.12명</u> 이상 <u>1.32명</u> 미만인 경우 : 합계출산율 2 유형 라. 합계출산율이 <u>0.92명</u> 이상 <u>1.12명</u> 미만인 경우 : 합계출산율 1 유형

[별표 6]

현행		개정안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		
1. 세출 효율화		
반영항목	산정방식	산정방식
1. 인건비 건전 운영	① $(1 - \text{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결산액} \div \text{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times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기준인건비 절감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결산액 중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분야,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인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결과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2018년 결산분]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해당연도 전환비용} -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전환비용}] \times 20\%$ ※ 2018년도 전환비용에 2017년 9월~12월 실적을 포함하되, 2017년도 전환비용에서는 동 기간의 전환비용을 제외한다. [2019년 이후 결산분] $[1 - 1/2 \times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전환비용} \div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해당연도 전환비용}) + 2018년 이후 해당연도 전환비용 대비 전년도 전환비용 비율의 평균\}] \times \text{해당연도 전환비용} \times 20\%$ * 전환비용 = 정규직 전환인원 × 1인당 전환비용(전국 공통기준 적용) ※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전환비율(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전환인원)	$(1 - \text{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결산액} \div \text{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times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기준인건비 절감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결산액 중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분야,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인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결과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삭제)

현행		개정안
	평균을 상회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결과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 으로 본다. ※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2. 지방의회 경비 절감	(생략)	(현행과 같음)
3. 업무추진비 절감	(생략)	(현행과 같음)
4.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생략)	(현행과 같음)
5. 지방보조금 절감	(생략)	(현행과 같음)
6. 민간위탁금 절감	(생략)	(현행과 같음)
(삭제) 7. 일자리 창출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연평균 고용률 증가분) +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연평균 업체수 증가율)] × 해당 지방자치단체 「노동」, 「평생·직업교육」 및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 결산액 ※ 연평균 고용률 증가분 또는 연평균 업체수 증가율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삭제)

현행		개정안	
7. 예산집행 노력	① (동종 지방자치단체 <u>평균</u> 불용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불용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불용액 총액 * 불용률 = 불용액 총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종 예산현액 ※ 불용액은 집행잔액 총액(집행사유 미발생, 세출절감, 낙찰차액, 일반·재난예비비 등)을 말한다. 다만, 초과세입 및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불용액은 제외한다. ※ <u>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보며, 2019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u>	① (동종 지방자치단체 <u>중위</u> 불용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불용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불용액 총액 * 불용률 = 불용액 총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종 예산현액 ※ 불용액은 집행잔액 총액(집행사유 미발생, 세출절감, 낙찰차액, 일반·재난예비비 등)을 말한다. 다만, 초과세입 및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불용액은 제외한다. ※ <u>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보며, 2020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9년도 결산분은 동종지방자치단체 평균 불용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u>	
	② (동종 지방자치단체 <u>평균</u> 이월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월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현액 × 5% * 이월률 = 이월액 총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종 예산현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재해 복구예산으로서 하반기에 교부되는 예산 중 이월되는 예산, <u>국고보조사업 중 국비 미교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라 이월되는 예산은 각각 예산현액 및 이월액에서 제외한다.</u> ※ <u>결과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보며, 2019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u> ※ ①, ②는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② (동종 지방자치단체 <u>중위</u> 이월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월률) ×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현액 × 5% * 이월률 = 이월액 총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종 예산현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재해 복구예산으로서 하반기에 교부되는 예산 중 이월되는 예산, <u>국고보조사업 중 이월되는 예산은 각각 예산현액 및 이월액에서 제외한다.</u> ※ <u>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보며, 2020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9년도 결산분은 동종지방자치단체 평균 이월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u> ※ ①, ②는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9.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u>(삭제)</u> 기관·시설 등의 공동 건립 및 운용과 관련된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별 자체재원 결산액* 총액 × 30%) * 결산액 = 시설비 + 운영비 + 인건비(단,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인건비는 제외한다)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u>(삭제)</u>	

현행		개정안
	비고 (생략)	비고 (현행과 같음)
2. 세입 확충		
반영항목	산정방식	산정방식
1. 지방세 징수율 제고	① (생략)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u>상위 1/2 단체</u> 평균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 ①, ② 산정 시 지난 연도분 부과·징수 실적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지방소비세 부과·징수 실적을 제외한다. ※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u>중위 단체</u> 평균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 ①, ② 산정 시 지난 연도분 부과·징수 실적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지방소비세 부과·징수 실적을 제외한다. ※ ②의 지방세 징수율 산정시 2019년도 결산분까지는 <u>상위1/2 단체</u> 를 적용하고, 2020년도 결산부터는 <u>중위단체</u> 를 적용한다. ※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2. 지방세 체납액 축소	① (생략) ② (동종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징수율 <u>상위 1/2 단체</u> 평균 체납징수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징수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 ※ 전전년도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분을 제외한다. ※ ②는 2019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 "①+②"의 결과 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① (현행과 같음) ② (동종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징수율 <u>중위 단체</u> 평균 체납징수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징수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 ※ 전전년도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분을 제외한다. ※ ②의 지방세 체납징수율 산정시 2019년도 결산분까지는 <u>상위1/2 단체</u> 를 적용하고, 2020년도 결산부터는 <u>중위단체</u> 를 적용한다. ※ "①+②"의 결과 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3. 경상세외 수입 확충	① (생략)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u>상위 1/2 단체</u> 평균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①, ② 산정 시 일반회계 경상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자 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제외한다. ※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u>중위 단체</u> 평균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①, ② 산정 시 일반회계 경상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자 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제외한다. ※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②의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산정시 2019년도 결산분까지는 상위 1/2 단체를 적용하고, 2020년도 결산부터는 중위단체를 적용한다.
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① (생략) ② (동종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u>상위 1/2 단체</u> 평균 체납 징수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 ※ 전전년도로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 중 결손처분분을 제외한다. ※ ②는 2019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① (현행과 같음) ② (동종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u>중위 단체</u> 평균 체납징수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 ※ 전전년도로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 중 결손처분분을 제외한다. ※ ②의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산정시 2019년도 결산분까지는 상위 1/2 단체를 적용하고, 2020년도 결산부터는 중위단체를 적용한다. ※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5. <u>적극적 세원 관리</u>	[주민세 개인균등분] [(전전년도 동지역 과세인원 × 표준세율 + 전전년도 읍·면지역 과세인원 × 표준세율) - (전전년도 동지역 과세인원 × 적용세율 + 전전년도 읍·면지역 과세인원 × 적용세율)] × 200%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분, 재산세, 자동차세 소유분]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① <u>탄력세율 적용</u> [주민세 개인균등분] [(전전년도 동지역 과세인원 × 표준세율 + 전전년도 읍·면지역 과세인원 × 표준세율) - (전전년도 동지역 과세인원 × 적용세율 + 전전년도 읍·면지역 과세인원 × 적용세율)] × 200%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분, 재산세, 자동차세 소유분]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현행		개정안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200%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200%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신설)	② 신세원 발굴 신(新)세원 * 징수액 × 적용률 * * * 신세원 : 숨겨진 과세대상의 발굴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되는 세입을 말한다. ** 적용률 : 최초 100%를 적용하고 1년이 지날 때마다 20%씩 차감하여 5년간 반영한다.
6. 지방세 감면액 축소	①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액 * × 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감면액(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면액, 법령에 따른 감면, 법령에서 정한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조례로 정한 감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감면은 제외한다) ②, ③ (생략)	①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액 * × 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감면액(같은 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감면액, 법령에 따른 감면, 법령에서 정한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조례로 정한 감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감면은 제외한다) ②, ③ (현행과 같음)
7. 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	(삭제) 신(新)세원 * 징수액 × 적용률 ** * 신세원 : 숨겨진 과세대상의 발굴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되는 세입을 말한다. ** 적용률 : 최초 100%를 적용하고 1년이 지날 때마다 20%씩 차감하여 5년간 반영한다.	(삭제)

[별표 8]

현행			개정안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제10조 관련)			
교부대상	산정항목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
1. 법 제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나. 항구복구사업	[교부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위하여 <u>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u>确定的한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많은 경우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교부금액 = 지방비 소요액 × 부담금 비율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율	[교부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위하여 <u>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u>确定的한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많은 경우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교부금액 = 지방비 소요액 × 부담금 비율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율